

##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신영웅\*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정책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 현황 분석하고, 이들의 유치 활성화 및 관리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유학생 유치 정책은 이제 하위 단계인 초·중등 교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 현장 및 관련 학계에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문헌 및 사례 분석 중심의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개념 정의와 통계 기준의 부재, 학사 및 체류 관리의 불안정성, 정책의 미비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 기준 확립,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유학생 유치 정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실태와 유학 생활 경험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현장 중심의 연구가 진행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현황, 외국인 유학생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유학생 관리

\* 상명대, 한국학, 박사과정 수료, newhero@smu.ac.kr

## 1. 서론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52년의 학령인구(6~21세)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감소할 것이며 일부 지방은 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4). 이로 인해 지방 소멸과 지역 일손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인구 유입 전략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을 시작으로 고등교육 중심의 유학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이하 스터디 코리아 300K)’를 통해 유학생 수용 역량 강화와 국제화 교육 기반 확대를 제시했다(관계부처 합동 2023). 특히 해당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초·중등 유학’이 정책 범위에 포함되었고, 사업 추진을 통해 해외 아동·청소년에게 한국 유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고등교육 중심의 유학 정책이 점차 초·중등교육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유학생 전형 신설, 국제학교 설립,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조례 개정, 비자 제도 개선 법안 발의 등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려는 일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노력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미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행 통계와 정책에서 다루는 ‘외국인 유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이상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외국인 유학생,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등의 용어들과 일부 개념적, 유형적 범위에서 중첩되어 정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사안과 상황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초·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들은 입학, 학사 관리, 체류, 의료·생활·복지 서비스 등의 접근에 실

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행정 실무자 역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현행 정책을 명확히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과정은 향후 지속 가능한 교육 국제화 정책 추진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사회 문제의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핵심 처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현황과 적용 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의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이론적 배경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정책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위 개념인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둘러싼 전반적인 정책 흐름 속에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위치와 특징을 이해하고 향후 정책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또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정의하고 유사 개념 정책 용어와의 비교를 통해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외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 정책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일반적으로 이민정책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며 출입국 관리, 국적 부여, 체류 자격, 사회 통합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김명수(2023)는 외국인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외국인 정책은 단순히 입국 허용 여부를 넘어 사회통합, 교육

권 보장, 생활 기반 구축 등의 영역을 포함하며 교육 및 복지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정책은 교육부와 법무부 양 부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부에서 시행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시기별로 그 목표와 방향성을 달리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김성은·이교일(2019)은 1960년대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변천 과정과 과제를 분석하며 초기 외교적 목적으로 시작된 유학생 유치는 경제적 논리와 학령인구 감소 등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며 양적 팽창과 질적 관리 사이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이 발전했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진화했으며 스테디 코리아 300K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와 관리 그리고 정주 지원 정책까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표 1>로 정리했다.

표 1.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추진 현황

구분	시기	주요 정책
외교 정책과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1960~ 1980년대	▶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시행 -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동남아 및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1998년 유학 목적 외국인 사증 제도 개선
교육의 세계화 및 교육 개방	1990년대	▶ 「5.31 교육개혁안」 발표, 김영삼 정부의 '교육의 세계화' 강조 - 세계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대학의 교육 경쟁력 강화 '유학생 역조 현상' 문제 대두
중국인 유학생 증가와 유치 정책의 본격화	2000년대 초반	▶ 2000년대 중국인 유학생 급증 -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교역 확대, 한류 열풍, 중국 정부의 해외 유학 장려 정책 반영 ▶ 2004년 스테디 코리아 프로젝트 수립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정책 본격 시행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관리 강화의 딜레마	2004~ 2019년	▶ 17기(2004~2008년) - 스테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한 유학생 수 연평균 40% 급증, 2007년 5만 명 목표 조기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기(2009~2011년)</li> <li>- 양적 팽창에 따른 부작용 발생</li> <li>- 2008년 스테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통한 유학생 지원 및 관리 개선 방안 도입</li> <li>▶3기(2012~2014년)</li> <li>- 유학생 중도 탈락, 불법 체류 등 문제 심화</li> <li>- 2011년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제 도입을 통한 부실 대학 제재 조치 시행</li> <li>▶4기(2015~2018년)</li> <li>- 관리 강화 조치로 인한 유학생 수 감소를 위기로 인식한 정부는 2015년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어학능력 기준 완화 등)을 발표하고 다시 유치 확대 정책 전개</li> </ul>
<p>정주 지원 강화 및 스테디 코리아 300k</p>	<p>2019년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의 국가적 과제 대응을 위한 전략 강화</li> <li>- 지역 맞춤형 인재 유치 및 정주 지원 정책 전개 및 지·산·학 협력 강화 (지역특화형 비자, 글로벌 대학 30, RISE 사업 등)</li> <li>▶2003년 스테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발표</li> <li>-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li> <li>- 첨단 및 이공계 중심의 장학 지원 확대</li> <li>▶유학 문턱 완화 및 지원 체계 강화</li> <li>- 입학 및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li> <li>- 2021년 유학생 건강 보험 가입 의무화</li> </ul>

자료: 김성은·이교일(2019)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김규찬·전미양(2024)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일반 외국인 정책에서 더 나아가 이민 정책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며 입국 및 체류의 목적이 학업이나 연구인 ‘학생’이자 출입국관리정책의 대상인 ‘외국인’으로 특수한 지위를 지닌 집단으로 설계된 정책군으로 보았다. 이들은 단순한 임시 체류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의 이주자로 간주되며 최근에는 국가 경쟁력 확보, 지역 활성화, 인구 정책과도 맞는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정책대상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체류, 정착 지원 정책에 직접적인 정책 대상이다. 법무부의 차수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된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아래 <표 2>로 정리했다.

표 2. 법무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목표와 주요 추진과제

차수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제1차 (2008~2012)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우수 유학생 유치 및 활용 지원 강화 -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사업(GKS) 확대 - 유학생 취업범위 확대 - 유학생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제한적 취업 허용
제2차 (2013~2017)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전략적 추진 - 우수유학생 유치 전담기관 지정·육성 - 유학생 한국생활 여건 개선 ▶ 유학생 관리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정착 - 글로벌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제3차 (2018~2022)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 있는 개방	▶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출신국 다변화 -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 ▶ 유학생 성장지원 확대 -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 - 학습, 적응지원 강화 -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 - 유학 취·창업 연계 확대
제4차 (2023~2027)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 유학생 유치 다변화 및 성장 지원 - 해외 한국유학 홍보 플랫폼 구축 - 유학생 취업을 위한 기업 정보교류 지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교육의 질 관리 - 외국인 유학생 학습 적응지원 강화

자료: 김규찬·전미양(2024)의 내용을 인용함.

## 2) 국제 통용 국제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의 정의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특정 프로그램에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의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된 외국인 학생’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학생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체로 같지만 정의는 국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이현주·이미정 2019).

유네스코통계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와 OECD와 같은 국

제기구는 유학생을 더욱 세분화하여 ‘국제 학생(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ly mobile students)’과 ‘외국인 학생(Foreign students)’으로 구분한다. 이 두 용어는 학생의 특성과 이동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제 학생은 학업을 목적으로 자신의 출생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동한 학생을 지칭한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유학하는 국가에 영구 거주하지 않는 비영주권자여야 한다. 둘째, 유학 이전의 선행 교육을 통해 모국에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이수했어야 한다. 셋째, 자신이 공부하는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 정의는 물리적인 국경 이동을 전제로 하므로, 원격 교육이나 자국 내 외국 기관 프로그램을 통한 학위 취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외국인 학생은 ‘유학하는 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국제 학생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장기 거주자나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유네스코통계연구소 홈페이지; OECD 2024).

한국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 제1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와 제7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한국의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정의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은 용어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재는 그렇지 않다.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와는 달리 아직까지 국내 학계와 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거나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연구는 대학교(고등교육)이상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나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중등 교육과정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최유진(2019)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실태와 정책을 분석했다.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선구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연구 범위가 고등학교 재학생과 한국어 교육 정책에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개념 정의는 부재하다.

강미령(2022)은 중국 국적 고등학생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제시하며 언어 수준과 문화 적응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유학생을 정책 대상으로 다루며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독립적 제도 분석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호섭 외(2016)은 예술계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제도적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로 고등학교 수준 유학생을 정책적 대상으로 접근한 시도가 돋보이는 연구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에 유학(학업)을 목적으로 일반연수(D-4-3)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 정의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을 아래 <표 3>으로 정리했다.

표 3.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세부 유형

체류목적	체류자격	교육기관	국적		연령
유학 (공부)	일반연수 (D-4-3)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본인	외국	만 6~17세
			부모	외국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유학(留學)은 “외국에 가서 공부함 또는 공부”로 정의되고, 유학생(留學生)을 “외국에 머물며 공부하는 학생”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목적은 유학(공부)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 및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제한하고, 비자 체계에 따라 일반

연수(D-4-3)비자 소지자로 체류 자격 범위를 한정하며 방문 동거(F-1)·거주(F-2)·동반(F-3)·재외동포(F-4)·영주(F-5)비자 소지자를 제외한다.

한국의 교육체제는 초등학교의 초등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등교육,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규 초·중등교육 기관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개념 범위에 포함한다.

국적은 본인을 포함한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한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계획」 및 개별 학교의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지원 자격에 본인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국적 보유자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특별 전형'은 연도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sup>1)</sup>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해당 기본사항에는 본인을 포함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외국국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는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도 동일하게 설정했다.

#### 4)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유사 개념 정책 용어 비교 분석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에서 사용되는 유사 개념 용어와의 비교 분석이 필수적이다.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은 용어 자체의 특성만으로 '이주배경학생(다문화학생)', '외국인 유학생', '이주배경청소년' 등의 용어와 혼동하기 쉽다. 실제로 이들 용어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부분적으로 포괄하거나 개념상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각 용어들은 입국 목적, 체류 자격, 출생지, 부모의 배경, 법령 적용 범위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 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과 지원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고등교육법」제34조의 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의 근거 법령에 따라 공표하며 7)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양계민(2021)은 국내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이다. 특히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자료를 종합하여 이주배경학생을 폭넓게 정의한 점은 본 연구에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 정의 시 유사 개념 용어와의 개념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오정은 외(2013)의 연구는 국내 체류 미성년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정책 및 법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체류, 교육, 복지, 진로 등 분야별로 제도를 구분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역시 미성년 이민자의 한 유형으로, 해당 연구는 이들을 둘러싼 현행 제도와 정책적 사각지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정책적으로 혼용되거나 구분이 불명확한 세 가지 정책 용어를 비교 분석하여 아래 <표 4>로 정리했다.

표 4.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과 유사 개념 정책 용어 비교표

항목	이주배경학생 (다문화학생)	외국인 유학생	이주배경청소년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의	국제결혼·외국인가정 자녀(국내출생 또는 중도입국 아동 포함)	대학(원) 또는 부설 어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 경험을 지닌 청소년	유학(학업)을 목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 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입국·체 류 목적	가족 단위의 이주 (이민 정착·정주)	유학 또는 어학연수	가족 이주, 정착, 탈북 등	학업(유학)을 위한 단독 혹은 동반 입국
국적	내국인 또는 외국인	외국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	외국인
출생지· 입국유형	국내출생·국외출생 (중도입국 포함)	주로 국외 출생 후 입국	국내 및 제3국 출생/ 중도입국 포함	주로 국외 출생 후 입국
대표 유형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학생) 등	대학(원) 유학생, 어학연수생	국제결혼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탈북자녀 등 7유형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체류 자격 (비자)	일반연수(D-4-3) 영주(F-5), 재외동포 (F-4), 동반(F-3), 방문취업(H-2) 등	유학(D-2), 일반연수(D-4)	일반연수(D-4-3) 방문동거(F-1), 동반 (F-3), 재외동포(F- 4), 영주(F-5), 방문 취업(H-2), 난민(G- 1), 무자격 등	일반연수(D-4-3)
연령대	6~18세	19세 이상	9~24세	6~17세
주요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출입 국관리법
주관 부처	교육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

유사 개념 정책 용어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은 현재까지 공식 정책 용어로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체류자격(비자)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학생(다문화학생)과 이주배경청소년에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될 수 있어 일부 기존 정책 분류와 겹치는 영역이 존재함에도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서 다루어지지 않아 정책 공백의 영역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체류, 생활 및 복지 등 지원 체계 전반의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한계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 분석적 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선행 연구와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공공 통계 데이터 검토 및 최신 정보 추가 확보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국내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 및 제도 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법무부, 지방

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의 정책 문서와 법령, 학술 연구 및 정책 보고서, 관련 보도자료와 공공 통계 자료를 포함하였다. 연구 분석 대상 및 내용을 아래 <표 5>로 정리했다.

표 5. 연구 분석 대상 및 내용

분석 대상	연구 내용
문헌 자료	'외국인 유학생', '초·중등 교육', '유학생 정책'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학술데이터베이스(KCI, RISS 등) 및 주요 학술지를 통한 자료 수집
정책 자료	교육부·법무부·지방자치단체 정책 자료, 언론 보도 자료 등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령 및 지침
통계 자료	교육부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 외국인 유학생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등록 외국인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아래 <그림 1>로 도식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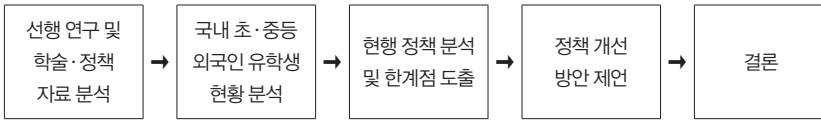


그림 1.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첫째, 선행연구와 학술·정책 자료를 분석하여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용어와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둘째,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정보공개청구 등을 활용하여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 국적별·지역별 분포, 유입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입학·학사 관리, 체류 관리, 유치 활성화 정책 등 현행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여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사각지대를 도출하였다.

넷째, 도출된 한계점을 바탕으로 제도적 정의 확립, 안정적 관리 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유학생 유치 정책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4.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분석

1989년 UN총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권리협약(CRC)’을 채택했고, 1991년 한국 정부도 해당 협약에 비준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 즉 외국인 학생도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국제아동인권센터 홈페이지). 외국인 학생의 범주 속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교육부, 법무부, 시·도교육청 등 여러 부처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현행 정책을 국내 체류 현황, 입학 정책, 출입국 및 체류 정책, 유학생 유치 활성화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 1)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 현황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체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현행 제도상 이들이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관리 체계도 미흡하기 때문에 현황 분석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에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법무부와 교육부의 공공 통계를 근거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적별·지역별 유학생 국내 체류 현황과 추이를 검토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등록 외국인 현황 자료는 일반연수(D-4-3)비자 소지자를 집계하며, 교육부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고등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별도로 제공한다. 두 자료를 통합하여 국적별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표 6>으로 제시하였다.

표 6. 국적별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중	고	초·중	고	초·중	고	초·중	고	초·중	고	초·중	고	초·중	고
중국	112	183	120	147	67	111	63	115	31	123	7	137	37	89
몽골	105	10	133	14	118	23	94	33	90	24	70	20	60	32
일본	66	102	64	74	43	74	29	74	46	40	29	35	35	24
베트남	23	8	27	9	25	18	20	18	14	15	3	15	5	35
미국	19	19	35	12	3	16	12	7	38	4	27	6	32	0
러시아	24	5	27	9	20	10	14	14	16	13	11	9	18	4
태국	5	3	4	4	3	0	1	0	1	1	0	2	3	8
인도네시아	3	6	1	6	1	3	1	4	2	2	2	5	7	4
기타	127	116	100	116	49	102	48	69	40	70	28	71	69	18
합계	484	452	511	391	329	357	282	334	278	292	177	300	266	214
	936		902		686		616		570		477		480	

자료: 법무부(2024a)의 등록외국인 현황,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통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함.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8년 9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480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4년에도 전체의 약 26%에 해당하는 126명이 중국 출신이었다. 몽골·일본·베트남 등 아시아권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성·문화 유사성·한류 확산과 같은 요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베트남은 2018년 31명에서 40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감소세와 상반되는 흐름을 보였다.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규모는 적으나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교육 단계별로는 중국·베트남·태국은 고등학교 비중이 높아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목적의 유학으로, 몽골·일본·미국·러시아 등은 초·중학교 유학생 비중이 높아 가족 동반 유학의 형태로 유입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 7〉은 일반연수(D-4-3)비자 소지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등록 외국인 현황을 제시한 자료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표 7. 지역별 일반연수(D-4-3)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지역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서울특별시	409	351	263	268	259	235	210
경상북도	15	12	15	16	11	9	63
경기도	146	157	126	103	86	60	40
부산광역시	98	113	77	63	56	49	37
제주특별자치도	35	36	29	29	34	28	30
인천광역시	55	65	42	36	39	28	25
대전광역시	5	6	12	15	14	10	17
경상남도	45	42	26	26	26	19	14
전라남도	48	31	19	9	6	4	10
대구광역시	25	26	22	10	11	10	9
충청남도	22	23	15	11	9	7	9
강원도	3	4	2	1	1	2	5
전라북도	8	13	16	13	7	5	4
광주광역시	13	13	13	10	9	8	3
울산광역시	3	3	2	0	0	1	2
충청북도	6	5	6	5	1	2	2
세종특별자치시	0	2	1	1	1	0	0
합계	936	902	686	616	570	477	480

자료: 법무부(2024a)의 등록외국인 현황 통계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은 2018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서울은 308명에서 210명으로, 경기도는 145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든 반면, 경북은 7명에서 63명으로 증가하여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유치 정책 효과를 보여준다. 제주도 역시 국제학교 기반으로 일정 규모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표 6〉과 〈표 7〉의 분석 결과,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한 유입은 한국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국적은 중국 등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단계별 선호 차이는 향후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일부 지방으로의 이동은 지방정부 차원의 유학생 유

치 노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한국의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이동 제한과 학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미국 국제교육재단(AIFS)의 보고서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의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급감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고등교육 부문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등교육은 여전히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AIFS 2025)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주요 유학 송출국에서 자국 내 국제학교와 영어 기반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비대면 교육 인프라가 발전되는 등 새로운 교육 선택지가 늘어난 점도 해외 유학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금까지 국내 정책은 고등교육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집중되어 왔으며,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집단은 배제되었다. 독립적인 정책 개념과 관리 체계의 부재, 그리고 소극적인 유치 정책 운영 등은 유학생 감소세를 더욱 심화시키는 내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은 여전히 연구 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이들은 대학 진학, 국내 취업, 지역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서 기능할 잠재력을 지닌다. 둘째,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학교 존립과 교육 인프라 유지에 기여한다. 셋째, 교육부 스터디 코리아 300K는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통해 약 4조 8,5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관계부처 합동 2023),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존재는 한국 교육의 국제화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세계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 입학 및 학사 관리 정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에서 이들을 포함할

수 있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용어를 사용하여 입학·편입학에 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3항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학생이 국내 초·중등학교에 정규 학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표 8.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관련 법령

구분	법령 조문	주요 내용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귀국학생,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입학 및 전학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제82조 (입학전형방법) 제3항	외국인 학생 등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허가 가능

한국의 초·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별도의 입학 전형 없이 거주지 기반 학군에 학생이 배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초·중학교 입학은 학군 배정 방식을 따라 관할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하여 입학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 국한되며 해외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학생들은 비자 발급 등의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8조(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근거해 각 시·도 교육청이 매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무상교육 기관을 제외한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자체 전형 요강에 따라 입학 절차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일부 직업계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초청의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자율성이 부여된 고등학교의 외국인 선발 입학 전형은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형 유형, 명칭, 대상자 범위, 지원 및 전형(선발)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는 2026학년도 기준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외국인 유학생 전형 내용을 정리했다.

표 9. 외국인 유학생 선발 전형이 설치된 시·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지역	전형 유형	전형 명칭	전형 대상자	지원 방법	전형(선발) 방법
서울	특별학생 및 추가전형	외국인 유학생 전형	① 국내 고등학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학생 ② 일반연수(D-4-3) 비자 발급자 ③ 대한민국 국적 이 중소지자 제외	해당 고등학교 직접 지원	모집인원 등 구체적인 선발방법은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 선발
경북	외국인 유학생전형	외국인 유학생 전형			
전남	기타학생전형	해외인재전형			
충남	기타전형	외국인 유학생			
강원	기타학생전형	외국인 유학생 전형			
전북	특별전형(정원내)	외국인 유학생 전형			

\* 전형 없음: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충북  
 자료: 17개 시·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현재 서울, 경북, 전남, 충남, 전북 6개 지역에서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별도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11개 시·도에서는 별도의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규정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전형 명칭과 유형은 다르지만 ‘특별’, ‘추가’, ‘기타(학생)’ 전형이 일반적이고, 세부 명칭은 ‘외국인(유학생)전형’ 또는 ‘해외인재전형’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원 외’ 전형으로 선발 정원의 2~3%인원을 선발지만 전북의 경우 ‘정원 내’ 범위에서 선발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전형 대상자는 ①국내 고등학교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학생, ②일반연수(D-4-3) 비자 발급자, ③대한민국 국적 이중소지자 제외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원 및 선발 방식은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며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전형 요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외국인 학생’을 위한 ‘특례입학’ 제도가 운영되지만 이는 국내 중학교 졸업자(또는 1년 6개월 이상 수학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바로 입학하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은 실질적으로 특례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초·중·고등학교는 기존의 내국인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지닌 외국인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사 관리 체계 또한 내국인 중심의 기존 시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출신국의 교육 체제와 이수 연한이 다를 경우 입학 학력 인정, 학년 배정, 성적 인정 등의 절차가 복잡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7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2는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 국적 아동 및 다문화 학생의 학력을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외국에서 수학한 교육 경력을 인정하여 한국의 교육기관으로 적절하게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학적 관리 관련 법령

구분	법령 조문	주요 내용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학력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문화학생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위 법령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현장의 실무 행정을 보완하고자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매뉴얼』<sup>2)</sup>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기존 내국인 중심의 학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로서 외국 국적 학생의 학교급별 입학·취학·편입학 안내,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 관리 요령(교육정보시스템 처리방법 포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매뉴얼은 내국인 학생 중심으로 설계된 학사 시스템에 다문화학생, 외국 국적 학생 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학력 증명이 어려운 외국 학교 출신 학생의 입학 절차나 학년 배정 방식에 관한 실무 처리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

### 3) 출입국 및 체류 정책

한국의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출입국 및 체류 제도는 이민정책의 일부로 포함되며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이들의 합법적 체류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한국의 교육기관으로 입학 예정인 해외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세부 발급 자격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의 『시증발급 안내매뉴얼』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비자 발급 요건 및 방법을 <표 11>로 정리했다.

표 11. 일반연수(D-4-3) 비자 발급 요건 및 방법

구분	세부 내용			
대상자	외국 국적자로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정규 과정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체류자격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사증신청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체류기간	최대 1년 이내, 단수			
신청기관	입학 예정 학교 소재지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허용 교육기관	①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제외) ② 기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연간 학비 500만원 이상,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증 기관) ③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포함), ④ 과학영재학교			
제한 교육기관	무상 의무교육기관(초등, 일부 중등)은 원칙적 제외 (정부·지자체 초청 전액장학생의 경우 예외 허용)			
신청 대상	①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	②	자비 부담 외국인 유학생
		교육기관 입학허가자(초청 공무원으로 학비·체류비 입증 가능)		학비 및 체류비 전액 자비 부담 (국내 거주 후견인 필요)
후견인 조건	① 국민 또는 등록 외국인 ② 유학생과 친족 또는 부모와 친분 있는 자 ③ 불법체류 다발국 출신자는 GNI 이상 소득 또는 중위소득 이상 자산 보유 ④ 후견인 1인당 최대 유학생 2명 지정 가능 ⑤ 기속사 입소 고등학생은 후견인 면제 가능 (학교장 확인서 필요)			
주요 첨부서류	공통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교육기관 사업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입학허가서, 최종 학력 입증서류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추가서류	학비 납부 내역서(수업료·기숙사비·입학금 등 유학 관련 비용 일체), 국내 체류 비용 부담 능력 입증 서류(예금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 내역서), 후견 보증서, 후견인 재정 입증 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후견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 추가서류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문)

자료: 법무부(2025)의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한국의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연수(D-4-3) 비자를 통해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해당 비자는 외국 국적자가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체류자격으로, 1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단수 비자 형태로 발급된다. 비자 신청은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내에서는 입학 예정 학교 소재지의 출입국·외국인청 담당기관으로 지정되어 처리된다.

비자 허용 대상 교육기관은 정규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되, 공민학교, 방송통신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과학영재학교도 포함되며, 이중 일부는 연간 학비 500만 원 이상 및 교육감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무상 의무교육기관(초등학교 및 일부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 정부·지자체 초청 장학생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자 신청자는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과 2)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학비 및 체류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국내에 후견인 지정이 필수이다. 후견인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등록 외국인이어야 하며, 유학생과 친족이거나 부모와 친분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국가 출신자의 경우 후견인은 중위 소득 이상 또는 GNI수준의 자산 보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후견인 1인당 최대 2명의 유학생만 수용할 수 있다. 단, 기숙사에 입소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 제출을 통해 후견인 지정 의무가 면제된다.

필수 첨부 서류에는 공통적으로 여권사본, 입학허가서, 교육기관 등록증, 최종학력 증명서 등이 요구되며, 자비 부담 유학생은 추가로 학비 납부 증명서, 예금 잔고 증명서, 후견보증서 및 후견인 재정 능력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초청 외국인 유학생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문 또는 장학금 수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비자 발급 및 입국 절차를 <그림 2>으로 도식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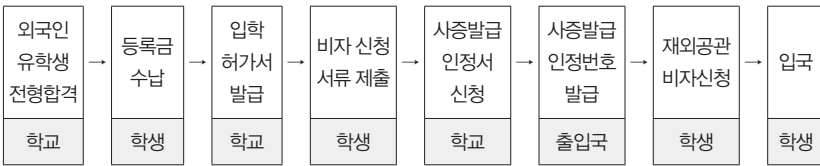


그림 2. 일반연수(D-4-3)비자 발급 및 입국 절차

학생은 입학 희망교의 전형 절차에 따라 합격을 통지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금 및 제반 경비 등을 수납하고(초청 학생 예외) 납부가 확인되면 교육기관은 입학허가서를 발행한다. 학교는 초청자로서 학생으로부터 기타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 받아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시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시증발급번호를 통지한다. 학교는 이를 학생에게 전달하고 학생은 시증발급신청서에 시증발급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국가의 한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된다.

#### 4) 유학생 유치 활성화 정책

교육부는 2023년 스테디 코리아 300K를 발표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국가경쟁력 확보와 인구절벽 대응 방안으로 강조하였다. 본 정책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와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외국인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며, 정부는 '초·중등유학 저변

확대'라는 세부 과제를 통해 초·중등 외국인 유학이라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정책 문건에 언급했다. 이는 기존에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위주의 유학생 정책에서 초·중등 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의 존재도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교사교류(이주배경 국가와의 교류 및 해외 파견 등), 학생교류(단기 교류, 상호 이해 교육 등) 방식을 통해 초·중등 단계부터 한국 유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 추진된 사업 현황을 아래 <표 12>로 정리했다.

표 12. 스터디 코리아 300K 초·중등유학 저변 확대 사업 추진 현황

연도	사업분류	사업내용	주요 실적
2023	교사교류	말레이시아 등 7개국과 교류사업 추진	176명 참여
	교사교류	우즈베크 등 10개국 파견	60명 파견
	학생교류	한국어교육 기반 온·오프라인 학생교류 및 상호이해교육 등 교류협력 추진	7개 시범 교육청 참여
2024	교사교류	말레이시아 등 7개국과 교류사업 추진	147명 참여
	학생교류	39개국 해외 청소년 방한 연수	100여명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2024)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 학령인구 감소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등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3. 지방자치단체의 유학생 선발 및 유치 정책 현황

지역	정책(사업명)	추진 내용 및 목적	비고
경상북도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업 글로벌 경북학당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현지 한국어교육 센터 연계, 전담 부서 설치	'외국인 공동체과' 신설 등 제도화 단계
전라남도	외국인 유학생 모집·선발 전남미래국제교 설립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직업교육 중심 공립 대안학교 설립(2026년 개교 예정)	유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포함

충청남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	몽골·우즈벡 등 우수학생 유치, 직업교육+정착 지원	산업체 취업, 대학 진학 연계
강원도	국제직업고 육성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확보 및 지역 정착 유도	'24년 추진 연기 → '26년 입학 예정
전라북도	국제케이팝학교 (공립 정규학교)	초중고 통합 정규과정 운영, 한류 (K-pop) 기반 유학생 유치	전북특별법 기반, 정규 학력 인정
부산광역시	K-POP특성화고 설립 추진	폐교 리모델링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시도	비자 발급 문제로 사업 보류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전형 제안	'정원 외 외국인 전형' 도입 논의 중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 단계

자료: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2025년 7월 기준).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는 공통적으로 직업계고를 활용해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하고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상북도는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사업」을 도입하여 해외 우수 유학생 유입과 함께 채용·정착을 연계함으로써 지방 소멸 문제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내 55개 직업계고에 동남아·CIS지역 고등학생을 입학시켜 취업까지 연계하는 조건으로 학비와 체류비 일부를 지원하며, 그 결과 2024~2025학년도에 총 113명의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입학하였다. 또한 현지 한국어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전담 부서(외국인 공동체과) 신설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경상북도교육청 직업계고 포털 2025).

전라남도 역시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모집·선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학년도 한 해에 총 77명의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쿠바 국적의 유학생이 입학했다. 더 나아가 2026년도에는 강진에 직업교육 중심 공립 대안학교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유학생과 이주배경학생 90명을 신규로 유치할 예정이다(전라남도교육청 2025).

충청남도는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을 선발하여 직업교육과 지역 정착을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 중이며, 강원도는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확보와 지역 정착을 목표로 '국제 직업고' 전환을 추진하며 2025학년도 베트남 학생 유치를 계

획 하였으나 개교 시점이 2026년으로 연기된 상태이다.

전라북도와 부산광역시는 K-POP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유학생 유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초·중·고 통합 정규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케이팝학교(가칭)’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류 기반 교육을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으로 주목된다. 부산광역시는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K-POP특성화고 설립을 시도하였으나,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사업이 보류된 상태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도의회 차원에서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추어 차별화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학생 수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구조 개선이라는 장기적 목표와도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는 향후 국가 차원의 교육 국제화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한 경험적 토대가 될 수 있다.

## 5.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제언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근에야 시작되었으며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선행 연구 또한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현행 정책의 주요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1)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개념 정의 및 통계 기준의 부재

한국은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통계 기준의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이주배경학생 등 유사 용어와 혼용되거나, 방문 동거(F-1)나 동반(F-3) 계열의 비

자를 소지한 학생의 경우 비자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실제 유학생의 규모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 유학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법제화 해야한다.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학업을 주 목적으로 국내 초·중등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비자 유형과 관계없이 학생의 실질적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교육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명문화하여 유학생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방문 동거(F-1), 동반(F-3) 계열 비자 소지 외국인 학생들을 '실질 유학생'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고등학교에 재학 외국인 유학생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반면,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 현황 통계에는 일반연수(D-4-3)비자를 소지한 초·중등 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이 모두 포함하나, 비자 세부 유형 구분이 없어 학교급별 구분이 어렵다. 이처럼 통계 기준의 불일치는 정책 수요 분석 및 설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육부의 통계는 고등학교 유학생만 포함하고, 법무부 통계는 일반연수(D-4-3)비자 소지자 전체를 집계하여 학교급별 구분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미국의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와 호주의 PRISMS(Provider Registr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System)는 각각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유학생 비자 정보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학업 수준별로 분류된 총 유학생 수와 신입생 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자료의 확보를 넘어, 유입 동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 2)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전형 표준안의 부재

한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입학 시스템이 부재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고 절차가 비표준화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부모는 개별적으로 학교에 접촉해 입학 신청을 해야하며, 선발 과정은 대부분 학교장의 재량에 의존하는 구조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2025). 이러한 체제는 유학생 유치 보다는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중점을 두는 현행 제도의 한계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선발 전형의 설치 여부나 명칭이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제각각이다. 이는 정보 습득을 어렵게 만들고 개별 소통에 의존하는 선발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단위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가칭)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입학 통합 안내 시스템’을 신설하거나, 기존 고등교육 기관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한국유학종합시스템(스터디인코리아)’에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입학 안내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Study in the States’ 플랫폼이나 캐나다의 주 교육청 온라인 포털처럼 지역별 학교 정보, 입학 절차, 비자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각기 다른 명칭과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전형 명칭과 기준을 정립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입학 정보 검색부터 지원, 서류 제출, 비자, 등록 등 모든 절차를 통합한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해야한다.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평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한국 초·중등 교육의 신뢰도를 높여 유학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3)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전담 부서·인력 및 지원 체계 미흡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담 부서나 전문 인력이 부족

한 현실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 및 관리 부담을 초래한다. 이는 유학생의 언어·문화 적응 및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학업 만족도, 부진한 생활 적응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은 이미 국제처와 같은 전문 부서를 통해 유학생 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초·중등 교육기관도 지원 조직과 전담 인력 구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캐나다의 경우 지역별 교육청에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과 같은 전담 조직을 두어 유치, 관리, 학교 배정, 홈스테이, 학업 및 생활 지원 등을 총괄함으로써 일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Vancouver School Board 2025), 마찬가지로 한국의 시·도 교육청도 (가칭)국제교육지원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제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고등학교처럼 유학생 유치 학교에 지정 학교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를 두어 비자, 출입국 관리 등 주요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거나(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4), 전담 인력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직무 연수, 업무 수당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방안은 단순히 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교육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모든 교내 구성원이 긍정적인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4)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생활 지원 정책 부재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은 취약한 ‘미성년자’ 집단으로서 유학 중 체류, 거주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정책 개발에 있어 더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Tamtik and James 2025). 이들은 낮은 환경, 언어 장벽, 부모와의 분리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성이 높고, 위기 상황이나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위급 상황이나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숙소,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기반에서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자비 유학생의 경우 후견인의 지정이 비자 발급 요건이지만, 학교 기숙사에 입소할 경우 후견인 지정 의무가 면제되어 제도적 허점이 발생한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비자 발급의 편의성 때문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선택하지만, 주말, 연휴, 방학 기간에 기숙사가 운영되지 않으면 보호자 없이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다. 한국 내 친척이나 지인이 있어 안전한 임시 거처가 상시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숙사 미운영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인된 외부 숙소나 홈스테이 제도를 구축하거나, 캐나다처럼 국제학생 대상 표준 홈스테이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and Child Care 2024).

더 나아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의료 접근성, 긴급 응급 상황 대응, 심리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생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연계하여 지역 단위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생활 관리 매뉴얼과 긴급 보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비자 제도의 한계와 비자 코드 신설의 필요성

한국의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은 정규 학제에 맞지 않는 일반연수(D-4-3)<sup>3</sup> 비자를 발급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두 가지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비자 유효기간과 실제 학제 기간의 불일치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 일반연수 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되어, 매년 또는 매 학기 체류 연장을 해야 한다. 이와 달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주요 유학 국가들은 학업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장기 비자를 발급하여 학생의 체류 안정성을 보장한다. 둘째, 졸업 이후의 체류 자격 전환의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현

3 일반연수(D-4) 비자는 주로 단기 어학연수생이나 기술훈련 목적의 실습생에게 발급된다.

재 고등학교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정주로 이어지는 경로가 불확실하여 우수한 인재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지 못 하고 단기 체류에 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용 비자 체계(코드)를 신설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유학(D-2) 비자를 기반으로 ‘초·중등 교육단계별 유학 전용 비자’ 신설하면 학제와 연동된 체류기간(예: 초등학교는 최대 6년, 중·고등학교: 3년)을 부여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유학(D-2)비자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구직(D-10), 취업(E-7),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비자 등으로의 전환을 제도화하면,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전용 비자 코드를 신설하는 것은 체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6) 무상 의무교육기관 진입 제한 및 입학 정원 규제의 구조적 한계

한국의 초·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기관<sup>4</sup>으로 규정되어 있어 유학생 유치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한다. 현행 일반연수(D-4-3)비자 발급 조건은 무상 의무 교육기관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법무부 2025), 유학생은 학비를 납부하는 사립 교육기관으로 우회하거나 정부·지자체 초청 등의 절차를 통해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캐나다와 호주는 공립학교에서도 유학생에게 학비를 부과하고 입학을 허용한다(EduCanada 2025). 캐나다와 호주 사례는 한국이 유학생에게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고,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유학생 선발 인원을 학교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유연한 유학생 유치를 어렵게 한다. 이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을 ‘정원 외 특별전

4 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형'으로 제한 없이 모집하는 대학의 사례와 상반된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따라서 초·중등 교육기관의 유학생 수용 역량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유동적 선발 기준을 도입하여 교육기관에 유학생 유치·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개별 학교가 자발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7) 현행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한계

현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실효성과 편중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교육부의 스터디 코리아 300K의 초·중등 유학 사업은 주로 문화 교류와 단기 연수 중심으로 설계되어 유학생 저변 확대라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실효성 있는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적극적 홍보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해외 박람회, 입학 설명회,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여 실제 유학 수요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움직임이 요구된다.

최근 유학생 유치 정책이 직업계고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다수의 지자체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 대상자'가 아닌 '잠재적 인력 자원'으로 인식하여, 학업보다는 노동력 활용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학업 동기 저하, 중도 탈락, 문화적 부적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직업계고는 일반교과 수업이 부족하고 기초학력 보완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국내 학생조차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언 외 2019).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지닌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적응에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 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직업계고에 집중된 전략을 일반고, 초·중학교 등 다양한 학교 유형으로 확대하고, 기초학력 진단·보완 프로그램과 일반교과 교육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에게 균형 있는 학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로 정착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유치 활성화와 관리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개념 정의와 통계 기준의 부재, 입학·학사 및 체류 관리의 불안정성 등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는 주로 고등교육 단계의 유학생이나 이주배경학생을 중심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지적해 왔다. 일부 연구는 고등학교 유학생 한국어 교육 실태 및 정책 분석과 교육과정 설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초·중등 단계 유학생 집단의 독립적 연구 가치와 정책 수요의 존재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기존 연구가 주로 고등교육 단계의 유학생이나 이주배경학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괄하는 개념을 독립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단순히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단계를 넘어, 입학 및 학사 관리, 출입국·체류 정책, 유치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한계를 구조적으로 조명하였다. 셋째, 교육부와 법무부의 공공 통계 자료를 통합 분석하여 유학생 분포 현황과 추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향후 국내 고등교육 기관 진학·취업·정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들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으므로, 앞서 5장에서 제시한 현행 정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을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정책 분석에 기반하였기에 유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도 교육청의 행정 담당자 등의 실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정책 분석 범위 또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는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 한국어 발달, 생활 및 정서적 적응, 위기 대응 경험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 유학생' 개념 도입 이후 국내 체류 유학생의 규모·특성 변화와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초·중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유학생 유치 전략을 넘어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는 행보와 직결된다. 이들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교육-체류-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한국의 교육 국제화 수준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신: 신영웅(상명대학교 한국학과 박사과정수료)(newhero@smu.ac.kr)

Correspondence: Young Woong Shin(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Sangmyung University)(newhero@smu.ac.kr)

2025.07.21 접수, 2025.07.24 심사, 2025.08.20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강미령, 2022, 중국인 고등학교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계고 포털, 2025, 직업계 GO! 알 GO!, 홈페이지<해외우수유학생>일반 게시판, <https://www.gbe.kr/goodjob/>(검색일: 2025.07.19).
- 관계부처 합동, 2023,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년 8월.
- 관계부처 합동, 2024,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 1주기 점검 결과 1주기 점검 결과, 2024년 9월.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 2024년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2025년 유·초·중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지침서, 2025년 3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2023년 10월.
- 국제아동인권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김규찬·전미양, 2024, 한국 외국인 유학생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의 모색: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공공정책연구, 41(1), 65-97.
- 김명수, 2023,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한양법학, 34(3), 323-359.
- 김성은·이교일, 2019, 한국 정부 유학생 교육정책의 계보와 과제, 교육문화연구, 25(5), 61-78.
- 법무부, 2024a, 2023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2024b,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법무부, 2024c,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대비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 법무부, 2024d,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 법무부, 2025,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 양계민, 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정은 외, 2013, 미성년 이민자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
- 이현주·이미정, 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국내 지원 정책 연구, 인문사회21, 10(4), 235-250.
- 이호섭 외, 2016, 국내 예술계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 방안 연구, 교육부/한국연구재단·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 임언 외, 201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실태와 제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라남도교육청, 2025, 외국인 유학생 모집·선발, 홈페이지>외국인 유학생 모집·선발 개요, 운영 및 모집학교>, <https://www.jne.go.kr/>(검색일: 2025.07.19).
- 진현경, 2025, 국내거주 이주배경학생의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4(2), 1-2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5,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령, 홈페이지>책자형>외국인 유학생, <https://easylaw.go.kr/>(검색일: 2025.07.19).
- 최유진, 2019, 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인문사회21, 10(4), 1119-1134.
- 통계청, 2024,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c, 2027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2024년 8월.
- 17개 시·도교육청, 2025, 2026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 AIFS, 2025, Globally mobile youth: Trends in international secondary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2014-2024.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호주의 유학생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International Education>A managed system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n 2026, <https://www.education.gov.au/>(검색일: 2025.07.19).
-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and Child Care, 2024, K-12 international student homestay guidelines,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 Dandi Merga Gutema, et al., 2024, Exploring key themes and trends in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researc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6(3), 843-861.
- EduCanada, 2025, 캐나다 유학생 학비 및 체류 관련, 홈페이지>Global Affairs Canada>Edu Canada>Find study costs/Study permits and visas, <https://www.educanada.ca/>(검색일: 2025.07.19).
- OECD, 2024, Education at a glance 202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 Sedat GUMUS, et al., 2019, A review of research on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y: Science mapping the existing knowledge base.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24(5), 495-517.
- State Government of Victoria, 호주(빅토리아주) 유학생 학비 및 체류 관련, 2025, 홈페이지>International Student Program>Schools and Programs>Standard application (secondary school)<https://www.study.vic.gov.au/>(검색일: 2025.07.19).
- Study in the States, 2025, 미국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관련, 홈페이지>Schools>Kindergarten to Grade 12 Schools, <https://studyinthestates.dhs.gov/>(검색일: 2025.07.19).
- Tamtik, Merli and Connie Lam James, 2025, International education in the K-12 sector: Topics, trends and tensions, Springer.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2024, SEVIS by the numbers: General summary quarterly review.
- UNESCO, 2025, 외국인 유학생 정의 관련, 홈페이지>Glossary, <https://uis.unesco.org/en>(검색일: 2025.07.19).
- Vancouver School Board, 2025, 캐나다(밴쿠버) 유학생 입학/학비 관련, 홈페이지>Apply>Admissins/Fee, <https://www.vsb.bc.ca/International-Education>(검색일: 2025.07.19).

## International Stud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Policy Landscape and Future Directions

Young Woong Shi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landscap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K-12) and proposes measures to strengthen recruitment, management, and support. While policy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higher education, attention is now extending to the K-12 sector, yet the topic remains underexplored in policy and academic discourse. Using an exploratory approach grounded in literature and illustrative cases, the study identifies structural constraints: the absence of clear conceptual and statistical definitions, instability in academic-affairs and immigration management, and gaps in policy instruments. To address these issues, it recommends establishing legal and statistical baselines, building stable, school-level and inter-agency support systems, and implementing outcome-oriented recruitment policies. Future research should be field-based and empirical, examining schooling conditions and the lived experiences of K-12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Keywords** International Stud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tatus, Policy, Recruitment, Management and Support

---

\* Sang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Ph.D. Candidate, newhero@smu.ac.kr